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5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81호)

2025. 11.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 분리 실시	3
2. 인사청문회 실시기간 연장	7
3.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득구 · 한민수 · 이병진 · 양문석 · 이용우 · 정일영
소병훈 · 이성윤 · 맹성규 · 박 정 · 민병덕 · 김상욱
김문수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 의안번호 : 1298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

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 분리 실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4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략) <u><신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u>②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이하 “공직윤리청문회”라 한다)과 공직후보자의 직무적합성·전문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이하 “공직역량청문회”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 <u>③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u>
<u><신설></u> ② (생략)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u>인사청문회</u> 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u>공직역량청문회는</u> -----.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검증하여 직위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개인신상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윤리성과 업무능력 양 측면에서 각각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사청문회 분리에 관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 공직후보자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청문으로 인한 일정 지연이나 공직후보자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수

행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필요성 및 타당성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청문회의 검증 내용 및 비공개 필요성, 현행법상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점,¹⁾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²⁾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2018헌마1162³⁾),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의 내용·범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등

1) 「인사청문회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2022. 1. 27. 2018헌마1162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중]

2.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4) 「국회법」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충돌하는 사항이며 현행법상 청문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현재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 및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안번호 제1673호, 제11408호, 제12494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인사청문회 실시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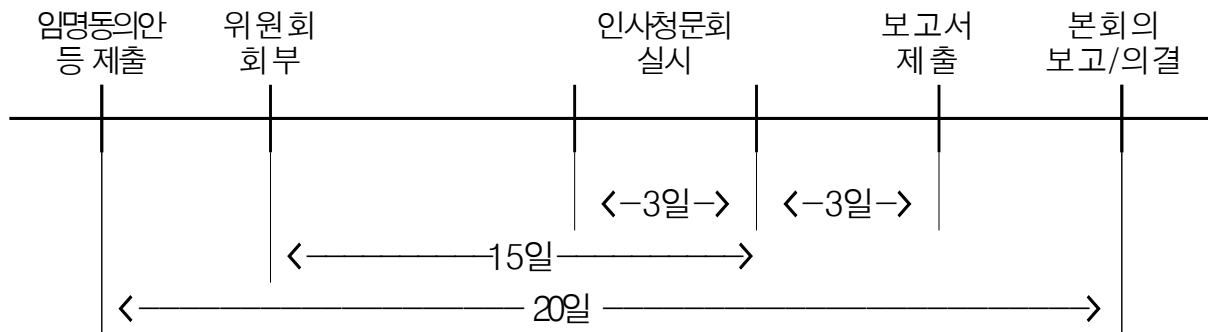
개정안은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위원회의 인사청문 실시기한을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실시기간을 각각 3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 ----- <u>30일</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u>인사청문회의</u> 기간은 <u>3일이내로</u>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 <u>20일</u> ----- ----- <u>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u> ----- <u>각각 3일 이내로</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 또한,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림-1] 현행 인사청문기간



이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열흘 남짓에 불과하므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공직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참고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97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58건(59.8%)이,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104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65건(62.5%)이 인사청문에 20일 이상 소요되었음. 또한, 2025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43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22건(51.1%)이 인사청문기간 20일을 도과하였음.

[표-3] 제20대~제22대국회 인사청문기간 사례 (2025. 8. 기준)

구 분	실시위원회	전 체	20일 경과 건수	비 율
제20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1건	19건	90.5%
	상임위원회	76건	39건	51.3%
	소계	97건	58건	59.8%
제21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8건	14건	77.8%
	상임위원회	86건	51건	59.3%
	소계	104건	65건	62.5%
제22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9건	4건	44.4%
	상임위원회	34건	18건	52.9%
	소계	43건	22건	51.1%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의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 분리 실시에 맞추어, 인사청문기간을 이전보다 연장하여 국회와 공직후보자 모두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공직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인사청문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사청문의 실효성 증진과 공직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중요 정책결정사항의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 관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안번호 제1673호, 제3186호, 제11410호 및 제11699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료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대통령실이 검증한 사항을 중복으로 자료요구·질의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됨.

개정안과 같이 사전검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불필요한 자료요구가 줄어들어 인사청문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검증에 필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 역시 공직후보자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공직후보자 선정 시 연방수사국, 국세청, 공직자윤리사전위원회 사전 조사를 통해 개인·가족, 세금, 범죄경력 등 233가지 항목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자료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⁵⁾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사전검증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률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전검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근거자료, 공개 여부 등이 법문언상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대상을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

5)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4년도 입법연구논문집, 국회사무처, p.46-48.

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로 규정하여,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추천된 자(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표-5]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 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 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 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 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는 필수 제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이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보고서를 해당 첨부서류에 추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15